

『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구미시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주민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지원대상 및 조건(안 제3조, 제4조)
 - 지원조건 :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 및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 시 지원
- 지원기준 및 제한 등(안 제5조 ~ 제10조)
 - 지원기준 : 신청 당시 평방미터당 표준건축비의 80퍼센트 이내
 - 지원제한 :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운영·관리 및 기타사항 등(안 제11조, 제12조)
 - 운영·관리 : 준공 후 건축물 대장 등재 및 마을회 소유로 등기,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운영·관리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마을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개선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마을회관 관리와 지원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,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원조건과 지원기준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